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2023. 5. 12. 공포·시행 규정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1.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

- 2024학년도 학부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대한 편제조정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인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을 신설하고 편제 및 정원 조정(증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제5조 별표1)

2024학년도 변경 전				2024학년도 변경 후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정원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정원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64명	⇒	공과대학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	 34명 60명

2.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

- 신설된지 2년 미만인 단과대학, 학과 또는 전공에 한하여 학생단체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임기 개시 시 4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단과대학, 학과 또는 전공에서 학생단체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 (제43조제6항)

3. 대학원 학칙 중 개정 학칙

가.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대한 편제조정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일반대학원 지능형반도체학과 신설 및 특수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9조제1항 별표1, 별표3)

1) 일반대학원 지능형반도체학과 신설

계열	학과명	학위과정	비고
공학	지능형반도체학과	석사학위	• 입학정원: 26명 • 학위명: 이/공학석사
		박사학위	• 입학정원: 13명 • 학위명: 이/공학박사

2)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

변경 전		변경 후	
학과 및 전공	정원	학과 및 전공	정원
임상헬스케어학과 1. 임상약학전공 2. 임상영양학전공 3. 바이오융합규제과학전공	64명	임상약학과*	20명
		임상헬스케어학과 1. 임상영양학전공 2. 바이오융합규제과학전공	44명
보건학과 1. 보건정책및관리전공 2. 융합바이오헬스전공		보건학과 1. 보건정책및관리전공 2. 융합바이오헬스전공	

*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함

나.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른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 운영 근거를 반영함 (제3조제3항 신설)

다.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9조제4항)

구분	내용
수업연한	4학기(2년)
재학연한	입학으로부터 7년 이내 (휴학 기간 포함)
학기당 취득학점	9학점
수료기준	1. 수업연한(4학기) 이상 등록 2. 수료학점: 30학점(전공 12학점 + 공통 6학점) 3. 성적기준: 총 평균평점 3.0 이상
졸업기준	종합시험 합격

라.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호스피스 전문과정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제22조제1항)

4.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

-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 및 임상약학과 온라인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학과별 교과과정을 반영함 (제17조 별표1)

<table>
<tr><th colspan="2">변경전</th><th colspan="2">변경후</th></tr>
<tr><th>일반 교과목</th><th>논문세미나 등</th><th>일반 교과목</th><th>논문세미나 등</th></tr>
<tr><td rowspan="2">공통과목: 6학점 이상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보충과목</td><td rowspan="2">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td><td>임상약학과
공통과목: 6학점 이상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보충과목</td><td></td></tr>
<tr><td>임상헬스케어학과, 보건학과
공통과목: 6학점 이상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보충과목</td><td>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td></tr>
</table>

5.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중 개정 직제

- 기획처 ‘평가팀’을 ‘성과관리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 분장 사항에 ‘대외평가지표 성과 상시 관리’와 ‘기타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6. 감사 규정 중 개정 규정

- 감사실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획처장이 감사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을 삭제함 (제6조제3항)

7. 교원인사 규정 중 개정 규정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에서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형식을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맞추어 개정함 (제59조)

8.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중 개정 세칙

가. 교원의 계열구분 중 자연과학계열 내 “AI융합학부”를 “인공지능대학”으로 변경 반영함 (제3조제2항제2호)

나. 계열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술지 논문 평가시 최근 3년간의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논문 인용색인에 기존 SCIE 및 SSCI 외에 예술 및 인문과학분야를 인용하는 A&HCI를 추가함 (제9조 별표 1)

다. 인공지능대학 소속교원의 승진·승급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반영함 (제13조 별표 9)

9.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

- 직제 개정에 따라 기획처 ‘평가팀’을 ‘성과관리팀’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함 (제2조)

10.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

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센터의 직무에 반영하고,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에 맞추어 일부 정비함 (제2조)

나. 센터의 조직으로 ‘창의융합교육실’과 ‘산학협력실’을 추가하고 각 실의 업무 분장 사항을 반영함 (제4조)

다. 공학교육인증 대상 전공을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으로 명시함 (제6조)

라. 센터 내 소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제7조제6항)

마. 조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함 (제11조)

11. 기업가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

- 기업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함 (제7조제2항)

변경 전	변경 후
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인재개발원장, 창업지원단장, 연계전공 교원 2명	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인재개발원장,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